

경력경쟁채용등 예정계급별 경력기준(제21조제1항제7호 관련)

구 분	계 급	3급	4급	5급	6급 이하
		연 구 관			연 구 사
근 무 또는 연구 경력	박 사	8년	4년	-	-
	석 사	12년	8년	4년	-

비고: 근무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경력을 말한다.